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633

발의연월일: 2024. 8. 8.

발 의 자 : 윤준병 · 염태영 · 임미애

황명선 · 문대림 · 이병진

이기헌 · 신정훈 · 이원택

문정복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재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을 설치·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재해 발생 빈도가 잦아지면서이에 따른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임. 특히, 매년 반복되는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농작물 침수·가축 폐사 등 재해 피해로 인하여 재산상 엄청난 손실을 끼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상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은 농어업재해에 따른 피해 전반에 대한 지원 성격이 아닌 재보험사업에 따른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고,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대책 수립과 재해를 입은 농 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에 드는 비용은 예산상 사유로 실제 피해액 보다 적게 책정되어 농어민의 피해에 대한 보조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어 재해대책 수립과 재해 피해를 입은 농어가 지원은 물론, 재 보험사업에 따른 보험금 지급 등을 아우를 수 있는 안정적인 기금 확 보 및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의 설치 및 운용 규정을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이관(명시)하여 재해대책 및 재 보험사업 등 농어업재해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삭제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 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 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 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의 제목 "재보험사업 및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을 "재보험사업"으로 한다.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장 재보험사업 및 농어업재해	제3장 재보험사업		
<u>재보험기금</u>			
제21조(기금의 설치) 농림축산식	<u><삭 제></u>		
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재보험사업			
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			
하여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이			
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			
<u>다.</u>			
제22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u><삭 제></u>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			
<u>다.</u>			
1.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받			
은 재보험료			
<u>2. 정부, 정부 외의 자 및 다른</u>			
기금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3. 재보험금의 회수 자금			
4. 기금의 운용수익금과 그 밖			
<u>의 수입금</u>			
<u>5. 제2항에 따른 차입금</u>			
6.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법」 제5조제2항제7호에 따라			
<u>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의</u>			

<u>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으로부</u> 터 받은 전입금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 의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금 융기관, 다른 기금 또는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2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 한다.

- 1.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재 보험금의 지급
- 2. 제22조제2항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 3.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위탁경비를 포함한다)의 지출
-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재보험사업을 유지·개선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의 지출

제2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 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 <삭 제>

<u><</u>삭 제>

<u>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관리</u> ·운용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 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기 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 의 일부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운용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25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농림 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하여 기금의 수입 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 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 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 공무원을 임명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4 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 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 하여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임 원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을, <삭 제>

그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 원은 기금수입정수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업무를, 기금지출 원은 기금지출관의 업무를, 기 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수행한다.